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1) 입법예고 (2022.9.8. ~ 9.28.)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내용 일부 개정으로, 추계작성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행정국 남북협력과 한재리 (☎2133-8665)